

## 맹인개안수술 실무지침해설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개안수술사업부제공〉

한국천주교회가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영세민에 대한 무료개안수술사업을 지난 5월부터 본 가톨릭병원협회산하 안과개설 의료기관에서 시작한 이후 5개월이 경과한 9월말 현재 200명을 시술하여 연말까지는 1차연도목표인 300명 시술계획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차연도인 '84년에는 금년 목표의 3.5배가 되는 1,035명을 시술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2차연도에 있어서는 각 지정의료기관이 개안수술진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재까지 5개월간의 발자취와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200주년기념사업 위원장 김남수주교님을 모시고 관계위원과 개안수술지정병원 실무자 등 16명이 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장충동 1가 분도빌딩)에 모여서 제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남수주교님의 치사로 시작된 제 2차 회의에서는 사업실적보고 (표 1)와 본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지정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지역에 2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이 지역의 환자가 서울까지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하였다. 이어서 건의사항, 요망사항에 대한 토의를 가지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결정하였는데 다

〈표 1〉 개인시술실적 (83. 5. 5~9. 30)

지정병원별	목표인원	신청인수	수술실적	진료종결
성모병원	71	130	32	23
강남성모병원	71	208	49	35
성바오로병원	19	19	11	10
메리놀병원	41	135	55	7
성분도병원	23	65	16	8
파티마병원	41	47	17	13
가톨릭병원	19	35	12	8
성빈센트병원	15	9	8	—
계	300명	648명	200명	104명

음은 이날 개정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에 참고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 1. 수술대상의 범위

수술대상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자 및 영세민 실명자(실명과정에 있는 시력장애자포함)로 다음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 (1) 의료보호 2종대상자(녹색진료증 소지자)
- (2) 의료봉사 진료권 소지자
- (3)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

〔참고〕 법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대상자와 의료보호 1종(황색진료권 소지자)가 신분 을 숨기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2. 수술대상 질병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음의 질병으로 한다.

- (1) 백내장
- (2) 녹내장

**[참고]** 각막이식수술을 수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전에는 각막질환을 대상질병으로 하였으나 안구기증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신청자에게 실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청접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각막이식수술신청자에게는 안구부족으로 수술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키도록 한다. 이미 신청을 접수한 대상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주도록 한다.

**[참고]** 익상편수술 및 망막박리수술을 대상질병에 포함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2차연도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3. 의료기관의 지정

가톨릭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지역의 환자진료를 위하여 광주시 및 대전시에 개인경영 의료기관을 추가지정하였다. 따라서 이미 지정한 8개 가톨릭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0개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표 2).

### 4. 진료지역의 분담과 의료기관별 시술목표 인원

지정의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수술목표인원과 진료지역을 분담하고 진료지역내 거주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한다(표 3).

**[참고]** 의료기관별 목표인원은 사업계획상의 목표이며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환자의 지역별 분포 등에 의하여 목표를 초과(또는 미달)시술하여도 무방하다.

## 5. 출장수술과 현지 의료시설의 이용

- (1) 지정의 의료기관으로 부터 원거리에 있는 진

〈표 2〉 개안수술지정의료기관

서울특별시 :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부산직할시 : 메리놀병원
성분도병원
대구직할시 : 파티마병원
가톨릭병원
수 원 시 : 성빈센트병원
광 주 시 : 홍안과병원
대 전 시 : 이기석안과의원

〈표 3〉 의료기관별 시술목표와 진료지역

지정의료기관	목표인원	진료지역
성모병원	51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강남성모병원	54	(공동지역) 경기도 중(양평군, 광주군, 성남시, 안양시, 시흥군, 용진군 이북지역) 강남성모병원 진료지역
성바오로병원	19	강원도
메리놀병원	41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성분도병원	19	제주도(공동지역)
파티마병원	41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가톨릭병원	19	(공동지역)
성빈센트병원	15	충청북도, 경기도 중(수원시, 화성군, 용인군, 여주군 이남지역)
홍안과병원	22	전라남도, 전라북도 중(부안군, 정읍군, 정주시, 고창군, 임실군, 남원군,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이기석안과	15	충청남도, 전라북도 중(군산시, 옥구군, 익산군, 이리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김제군)

료지역내 벽지, 도서지역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의료기관은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개안수술을 할 수 있다.

(2) 출장수술을 실시할 경우 지정의료기관은 현지 의료기관 (또는 현지 환자 관리자)과 협의하여 수술일정을 미리 정하고 지정일에 환자를 모이게하여 수술가능여부의 검사를 거쳐 수술대상자를 선정,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후의 환자진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개안수술의 신청절차

수술을 받고자 하는자는 개안수술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에 다음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과 안과의사의 소견(수술을 통하여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을 받아 환자거주지 지정의료기관(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거주자는 관할 천주교 교구청)에 신청한다.

- (1) 교회성직자(신부, 목사)
- (2) 수도, 전교단체의 장(수사, 수녀)
- (3) 동장(도시지역) 또는 읍·면장(군지역)
- (4) 사회복지사업단체의 장
- (5) 맹인관계 단체의 장

**[참고]** 신청자수가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대상자 심사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접수시에 주민등록 등본과 동장(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극빈자 증명서 등, 심사상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 7. 수술대상자의 선정

(1) 수술신청서를 접수한 지정의료기관장(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은 교구청)은 심사부서(사회사업과, 원무과 인성회 또는 별도구성한 심사기구)로 하여금 서류심사, 면접 또는 방문실사를 통하여 시술대상자를 선정한다.

(2) 수술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개안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신청자가 장기간 경과후에 혜택을 받지못하게 될 경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신청서류 접수시에 대상

자 선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류접수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결과를 본인에게 통지 해주되 수술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

(3) 의료보호 2종환자 국고부담금청구를 위한 협조요청

의료보호법상 진료지역외에 거주하는 의료보호 2종환자를 개안수술대상자로 선정한 경우는 본 자선부에 요청하여 보사부장관이 환자거주지역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진료비 지급에 협조하라는 지시공문회신을 받은 후에 개안수술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회신을 받는데 1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수술의 시기를 실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회신전에 수술하여도 무방하다.

### 8. 환자관리와 교정안경등의 무료지급

(1) 수술일정이 결정된 환자에게는 수술을 받는 과정, 수술후의 관리, 교정안경의 착용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환자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2) 지정의료기관은 수술후 처방에 의한 교정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교정안경은 15,000원, 콘택트렌즈는 7,000원정도로 대한 안경인협회회원 안경점에서 열가로 봉사한다고 한다.

### 9. 진료비의 청구와 지급

(1) 진료를 종결한 지정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서(별지 제 2호 서식)에 진료한 내용을 기록하고 환자의 수술확인을 받아 개안수술사업부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참고]** 진료비 청구서의 모든 항목은 한글로 기재하며 특히 진료경위, 치료종결후 소견란 등은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가) 진료경위...초진시의 질병상태와 시력 및 진료 개요

(나) 치료종결후 소견...수술결과와 개선된 시력

(다) 환자 종교란기록...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종교없음 등, 종교명을 기록한다.

(2) 개안수술부는 매월말일 현재까지 접수한 진료비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진료비를 지정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3) 지정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출장하여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출장지 의료기관 또는 현지 환자관리자에게 입원료 및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10. 진료비 지급기준

(1) 개안수술에 소요된 진료비는 각 병원의 일반수가와 관계없이 다음 지급기준 (표 4)에 의하여 2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부담한다.

(2) 진료중도 포기자의 진료비 지급

시술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서 수술을 포기한자에 대한 진료비(검사료 포함)는 의료보험수가에 준하여 1인당 50,000원한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진료비의 인상조정 내용

(가) “1인당”진료비를 “1안당”진료비로 개정하여 양안수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2배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나) 의료보호 2종환자의 진료비도 영세민진료비와 같이 총액(국고부담+천주교보조) 40만원이 되도록 인상조정하였다.

즉, 의료보호 2종환자의경우 대도시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50%를, 기타 지역은 의료보호진료

비의 80%를 국고(기금부담)에 청구하고 40만원에서 국고보조를 공제한 금액을 개안수술부에 청구한다.

### 11.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지역의 신청서 접수와 심사요령

(1) 광주, 전주, 대전교구 200주년사무국은 무료개안수술안내를 주보에 게재하여 관내 본당을 통하여 홍보한다.

(2)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환자는 개안수술신청서를 관할교구청에 제출한다.

(3) 개안수술신청서를 접수한 교구청에서는 수술대상자를 심사선정하여 지정의료기관(광주, 홍안과병원, 대전, 이기석안과)에 환자수용형편을 조회한후 개안수술의뢰서(서식임의)와 환자를 이송한다(표 3 참조).

(4) 지정의료기관은 교구청의 개안수술의뢰서와 환자를 확인하고 진료를 시행한다.

### 12. 개안수술사업부 사무실 설치

개안수술사업의 전체사무관리를 위하여 가톨릭병원협회안에 개안수술사업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실무를 관장한다.

①③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505  
(가톨릭의대 336호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개안수술사업부  
전화 593-5141 구내 1330번

〈표 4〉 진료비 지급기준

진료종별	대상별 의료기관 입원의 경우		수용시설, 벽지등에 출장수술하는 경우
	영세민 및 의료봉사환자	의료보호 2종	
백내장수술 1안당	40만원	기금부담(국고보조)을 포함하여 40만원	20만원
녹내장수술 1안당			